

검 토 의 건 서

【환경과】

제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

1. 제안이유

제237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 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변경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」 →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
- 나. 녹색제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(안 제2조)
- 다. 녹색제품 용어 정비 및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문장 정비 (안 제1조 ~ 안 제14조)

3. 검토의견

상위법령인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됨에 따라, 제명 및 관련 용어·문장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
 - ① (생략)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,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.
 - ④~⑨ (생략)